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6045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7.09.27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건설안전본부장	사장
			09/27
고정일	김태환	김승호	박현출
협 조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팀장 윤택인 </div>		
감 사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감사실 감사실 </div>		

대아청과(주) 비가림시설 신축계획(안)

2017. 9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

시설안전팀

대아청과(주) 비가림시설 신축계획(안)

목적

- 제주 월동무 냉해 예방으로 원활한 무 하차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
- 우천시 상품 보호 및 전동 지게차 충전 장소를 마련하고
- 헬리오시티 입주민 경매 소음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

1. 관련근거

- 시설안전팀-5976호(2017.9.25.) “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”
- 유통물류팀-1398호(2017.9.14.) “대아청과(주) 비가림시설 신축 계획”
- 대아청과(주) 총무2017-38호(2017.9.7.) “신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승인 의뢰”

2. 가설건축물 신축계획(안)

가. 대지현황

- 대지소유자 : 서울시농수산물공사
- 대지위치(지목)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(垆)

나. 설치자(건축주) : 대아청과(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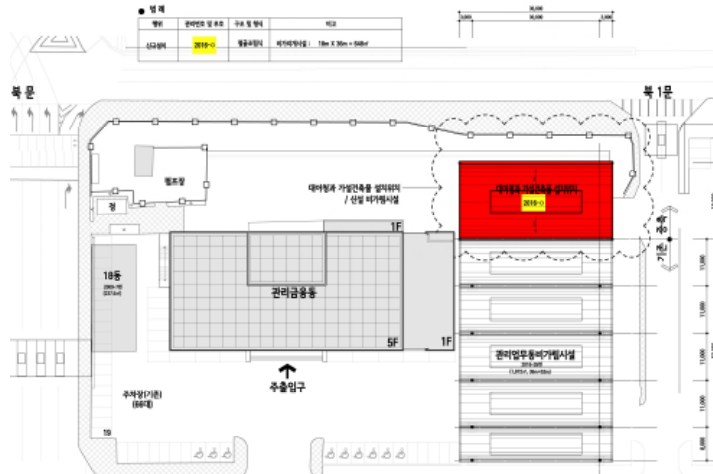
다. 설치규모 및 구조

바닥면적	건축면적	구조	비고
648㎡	648㎡	철골조(H빔)	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과 형태, 구조 동일

라. 용도 : 비가림시설

마. 소관부서 : 유통물류팀

바. 위치 :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



3.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

가. 일 시 : 2017년 9월 25일(월) 11:00~11:30

나. 장 소 : 가락물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

다. 심의 안건

- 의안 제5호 :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 대아청과(주) 비가림시설 1동 신축

라. 참 석 자

- 가설건축물심의 위원

구분	소속	성명	참석여부
위원장	건설안전본부장	김승호	참석
위 원	기획팀장	권상구	참석
위 원	재무팀장	김진중	참석
위 원	농산팀장	강성수	참석
위 원	수산팀장	최영규	참석
위 원	환경교통팀장	김인수	참석

※ 유통물류팀장은 금회 심의회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으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

- 간 사 : 시설안전팀장 김태환
- 소관부서 : 유통물류팀

마. 심의 결과

- 의안 제5호 : 원안 승인

4. 가설건축물 신축 승인조건

가. 특기사항

- ㉠ 대아청과(주)는 비가림 시설내 통로 확보를 위해 영업 및 상품 적치선을 준수하며, 적치물 점용에 따른 통로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관리에 책임을 진다.
- ㉡ 비가림 시설내 통로 면적은 36m×7m =252㎡ 확보 한다.
- ㉢ 대아청과(주)는 통로 확보를 위해 18:00~09:00까지 질서(교통) 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한다.
- ㉣ 비가림 시설은 도매거래 시간외(09:00~17:00) 고객 주차장으로 환원한다.
- ㉤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‘대아청과(주)’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, 시설물 및 공작물,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,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.

나. 일반적 사항

- ㉠ 본 시설의 설치, 관리, 철거 비용은 대아청과(주)가 부담한다.
- ㉡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,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대아청과(주) 비용으로 철거한다.
- ㉢ 대아청과(주)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, 본 시설의 설치, 사용,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㉣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, 공사용 잔재물은 대아청과(주)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
- ㉤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“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”에 의뢰하여 작성한다
- ㉥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, 감독을 받는다.
- ㉦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다.
 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“건설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 -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“전기공사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- ㉧ 공사 착공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
 -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
 - 설계도서
 - 공사도급계약서
 - 공사감리계약서
- ㉨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.
- 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 신고한다.

5. 행정사항

- 가.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(유통물류팀)
- 나.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(시설안전팀)
- 다.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(유통물류팀 → 대아청과주)
- 라. 착공계 제출 (대아청과주 → 시설안전팀)
 -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
 - 설계도서
 - 공사도급계약서
 - 공사감리계약서
- 마. 시공관리(시설안전팀)
- 바. 준공계 제출 (대아청과주 → 시설안전팀)
- 사.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(유통물류팀)

- 붙 임 : 1.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보고 1부
2. 이행확인서 1부
3. 도면 1부. 끝.